

	<h2 style="margin: 0;">산업기술연구소 운영규칙</h2>		규정번호	4-0-8
			제정일자	1989.03.01
			개정일자	2012.04.30
			개정번호	Ver. 12 총페이지 4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동양미래대학교 부속 “산업기술연구소”(이하 “본 연구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 연구소는 동양미래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 구성원의 연구개발 업무를 지원 및 활성화함으로써 국가, 지역, 산업사회 및 대학교육의 발전에 관련된 각종 지식의 창출, 및 학문영역의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대학의 실용성과 교육내용의 시대적 동시성을 유지하고 대학의 연구기능을 발전시키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 본 연구소는 동양미래대학교내에 둔다.

제4조(사업) 본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관장한다.

1. 산업 기술 각 분야별 이론과 응용에 관한 연구
2. 국가 및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한 각종 조사 및 연구
3. 국가기관 및 외부로부터 위탁한 과제의 조사, 연구 및 용역
4. 관련 연구 기관과의 학술정보의 교환 및 산업체와의 기술 협력
5. 교수의 각종 교내 연구비 및 연구관련 경비의 지원
6. 전문대학 교육발전을 위한 교과과정 및 이에 필요한 교육교재의 개발 지원
7. 대학논문집 및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의 발간
8. 기타 본 연구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조직) 본 연구소에는 소장을 두며, 소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연구부장 및 간사를 둘 수 있다.

1. 소장은 연구소의 운영을 총괄하며, 부교수 이상의 본 대학 전임 교수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
2. 연구부장 및 간사는 본 대학 전임 교수중에서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3. 본 연구소에는 분야별로 전문기술연구부를 둘 수 있으며, 그 존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 및 총장의 허가에 의하여 결정된다.

제6조(연구원) 본 연구소에는 제4조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은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연구소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1. 전임연구원 : 본 연구소에 소속되어 연구 업무에 전념하는 연구원
 - 가. 전임 연구원은 연구교수,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및 기술기능원으로 구분하되, 그 처우는 총장과의 계약에 의하여 결정한다.

나. 연구교수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교육경력, 연구실적, 사회적 업적 및 대외적 명망이 높은 경우에 한하여 임용한다.

다. 교수들이 수행하는 개별 프로젝트 수행 상 참여하는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경우도 참여율(프로젝트에 전념하는 정도)이 50% 이상인 경우는 전임 연구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이 때 임용기간 및 보수는 당해 프로젝트 수행 계획에 준한다.

라. 전임 연구원은 본교 교원의 복무규정과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는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결의 및 소장의 제청에 의하여 총장이 해임할 수 있다.

2. 겸임연구원 : 본 대학 전임교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겸임교수, 강사 및 외부 인사를 촉탁 연구원으로 둘 수 있다.

3. 특별연구원 : 타 기관의 연구원을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연구를 겸임하게 하는 특별연구원

제7조(위원회) 본 연구소에서는 산업기술연구소 운영위원회를 두되, 그 위원은 전공 계열별 교수로 구성 하고 연구소장이 위원장이 된다.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등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규칙을 두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한다.

1. 연구소의 사업계획, 사업실적, 연간 예산·결산, 연구소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폐, 연구 과제 선정과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한다.

2. 산업기술연구소 논문집의 발간과 관련하여 투고 논문의 심사위원 구성 및 심사 의뢰, 투고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게재 논문의 편집 및 발간 등에 관련한 제반 업무를 주관한다.

제8조(재정) 본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각종 대내외 연구비, 연구소 기금 및 학교의 보조금으로 충당한다.

제9조(연구 및 연구비 관리) 본 연구소를 통하여 시행되는 각종 대내외 연구과제 및 관련 연구비의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연구 간접경비의 적립) ① 연구 간접경비는 모든 연구비에 대하여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연구 간접경비의 징수대상 및 징수기준 등은 산업기술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③ 본 연구소는 연구비중 일정한 비율의 금액을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과 관리에 따른 제반 간접경비로서 징구하여, 연구소의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적립된 연구 기금은 교수 연구비 지원, 연구관련 경비 지원, 연구기자재의 도입, 전임 연구원의 임용 등 교수의 연구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산업기술연구소장이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결재를 득하여 집행한다.

⑤ 본 연구소를 통하여 시행되는 연구 간접경비의 적립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기자재) 연구비에 의하여 구입된 각종 기자재는 연구소 비품 또는 기자재로서 등록(등록대상 물품에 한함)하여야 하며, 연구자에 우선 사용권을 부여하고 연구자가 원하는 교내의 적절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학술활동지원 경비) ① 연구원의 연구결과의 발표와 관련하여, 국내외 학술지 게재료, 국내외 학술대회 발표 참가비, 특허 출원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각종 대내외 연구비 지원 과제에 관련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하되, 특허출원의 경우는 본 대학과의 공동명의로 출원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구비 지원여부와 무관하게 지원할 수 있다.

② 본 연구소를 통하여 시행되는 학술활동지원 경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연구장려금의 지급) ① 연구간접경비를 일정액이상 납부한 교원에게는 연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연구장려금의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기술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보고) 본 연구소의 연간 예산·결산,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15조(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산업기술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총장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1999년 중 부품개발 연구부, 자동화기술연구부, 정보통신기술연구부 및 멀티미디어 기술연구부를 설치 운영하되, 그 발족 시기와 구성은 소장이 결정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연구부로 기계기술연구부, 기계설계기술연구부, 전기시스템기술연구부, 정보전자기술연구부, 정보통신기술연구부, 응용화학기술연구부, 건축기술연구부, 자동화시스템기술연구부, 소프트웨어정보기술연구부, 인터넷비즈니스기술연구부, 모바일인터넷기술연구부, 디자인기술연구부, 경영기술연구부를 둔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